

예 산 총 칙

2018년도 간주예산 1 차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69,203,276	23,076,098
일반회계	693,038,830	20,791,165
특별회계	76,164,446	2,284,933
공기업특별회계	63,478,160	1,904,345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935,934	958,078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542,226	946,267
기타특별회계	12,686,286	380,589
의료보호특별회계	2,478,483	74,35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14,222	27,42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726,329	171,790
주택사업특별회계	522,861	15,686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3,044,391	91,3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02,27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다.